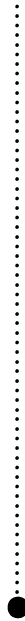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302회 임시회(2018. 7. 23 ~ 7. 2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쇠불이도 녹일 듯한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산업현장과
일터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특히 지난 7월 5일 출범한 우리
도의회 의원 구성과 새로운 출발에 많은 성원과 축하를
아끼지 않으신 3백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에다 15일간의 첫 임시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임시회를 열게 되어 의원님 여러
분께 참 미안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먼 길
오실 때 늘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초계획에 없는 임시회를 열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피서객 유치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SOC 확충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는 제7기 민선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더 알차고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한층 분발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으로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이고, 여름철 행락객 안전과 풍수해 피해가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경북의 관광명소와 피서지를 찾아오는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해 주시고, 올 여름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명과 가축·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폭염과 재해·재난에 취약한 노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강과 바다, 산에서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자기 계발과 호연지기를 키워가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도의회 원 구성 후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3백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꼼꼼히 살피주시고, 혹시라도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후서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I. 개	황		41
II. 의사일정			42
III. 의안처리			47
IV. 민원처리			48
V. 본회의 보고사항			50
VI. 5분 자유발언			52
□ 정영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52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55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58
□ 김준열 의원(농수산위원회)			62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66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02회 임시회는 2018년 7월 23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7월 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7월 23일(월) 11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금) 11시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도의회 원 구성후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3백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2018년 9월 4일 16:30분에 독도에서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11: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8년 7월 23일 ~ 7월 27일(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84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9	-	2	1	1	1	1	1	2	-
누 계	430	34	54	54	46	41	42	48	63	48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1:00 (제1차)	○ 5분 자유발언(정영길·김대일 의원) □ 안건처리 ○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지사)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7. 27(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박미경·김준열·김명호 의원) □ 안건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3:1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전락산업국 소관) ○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7. 26(목) 17:25 (제2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3:30 (제1차)	☐ 안건처리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3:30 (제1차)	☐ 안전처리 ○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3:00 (제1차)	☐ 안전처리 ○ 독도 수호 결의안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3:30 (제1차)	☐ 안전처리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추진단,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추진단,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계속)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3(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7. 25(수) 10:40 (제2차)	□ 안전처리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기획조정실 소관 나. 감사관·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해양수산국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투자유치실·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도청신도시추진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바.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7. 26(목) 10:30 (제3차)	□ 안전처리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12 (26)	11 (25)	11 (25)	8 (22)	3 (3)	0 (0)	0 (0)	0 (0)	1 (1)	
조 례 안	소 계	3 (3)	3 (3)	3 (3)	2 (2)	1 (1)	0 (0)	0 (0)	0 (0)	0 (0)	
	의 회 제 안	0 (0)	0 (0)	0 (0)							
	도지사 제 출	3 (3)	3 (3)	3 (3)	2 (2)	1 (1)					
	교육감 제 출	0 (0)	0 (0)	0 (0)							
규 칙 안		0 (0)	0 (0)	0 (0)							
예산·결산		2 (2)	2 (2)	2 (2)		2 (2)					
동의·승인		2 (2)	2 (2)	2 (2)	2 (2)						
건 의 안		0 (0)	0 (0)	0 (0)							
결 의 안		2 (5)	1 (4)	1 (4)	1 (4)					1 (1)	
기 타 안		3 (14)	3 (14)	3 (14)	3 (14)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02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3)				1 (1)	1 (1)	1 (1)			
의 회 운 영										
기 회 경 제	1 (1)						1 (1)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농수산										
건 설 소 방	1 (1)				1 (1)					
교 육	1 (1)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3
의회운영						
기획경제						1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1
교 육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2건(조례안 3, 예산안 2, 동의안 2, 결의안 2, 기타안 3)

2. 처리 의안 : 11건

○ 가결 의안 : 11건(조례안 3, 예산안 2, 동의안 2, 결의안 1, 기타안 3)

○ 계류 의안 : 결의안 1건

- 독도 수호 결의안('18. 7. 23, 농수산위원장)

*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독도)에 상정요청으로 보류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3건(원안가결 2, 수정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 고
1	'18. 7. 16	도지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예 산 안 : 2건(수정가결 2)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 고
1	'18. 7. 16	도지사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	"	교육감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동 의 안 : 2건(원안가결 2)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 고
1	'18. 7. 16	교육감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	"	도지사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

○ 결 의 안 : 2건(원안가결 1, 계류중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 고
1	'18. 7. 27	의회운영 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2	'18. 7. 23	농수산 위원장	독도 수호 결의안	미처리 (계류중)

○ 기 타 안 : 3건(원안가결 3)

연번	접수일	제출자	안 건 명	비 고
1	'18. 7. 23	의 장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	"	휴회의 건	

4.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 : 3건

연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	'18. 7. 29	경상북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8. 16 (제4087호)
2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88호)
3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89호)

VI. 5분 자유발언

□ 2018년 7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영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참전명예수당 인상 촉구 관련 》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온열 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9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위훈·보국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경북도에서는 2018년 기준 2만 1,643명에게 매월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번의 인상 없이 1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6.25 참전유공자는 87세, 월남전 참전유공자 71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에서 3,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 분들에게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살아계실때 참전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경상북도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첫걸음이 참전명예수당인상입니다. 10년 동안 1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호국의 고장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경북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경북은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여야 했으며 참전유공자의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젊은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호국의 고장에서 고작 1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세종시와 경상남도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광주시·대전시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편성하여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참전유공자의 위훈·보국 정신 선양과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난 5월 31일 공식적인 도지사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주 통일전을 참배하고 화랑정신·호국정신·선비정신과

새마을정신이 경북의 정신이고 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경북의 혼을 대한민국의 혼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면서 호국정신을 경북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호로만 호국정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실질적으로 예우 받는 정책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7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제2청사 건립중단 및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 촉구 관련》

안동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제2청사 건립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2006년 민선4기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으로, 도청이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입지선정 기준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단 83명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 위치인 안동시, 예천군 일원으로 2008년 6월9일 도청 이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신청사가 건립되었고, 2006년 7월부터 2016년 3월 이전이 완료되기 까지 10년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 1,55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부지 25만㎡, 연 면적14만 4,940㎡, 총사업비 3,92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신도청에 사무공간을 모두 마련하고도 동해안 발전본부는 대구청사에 남아 있더니, 2018년 1월에는 환동해 지역본부로 격상되어 171명의 직원이 포항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안동시와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수십년간, 경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지로써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 왔습니다

도청이 이전하여 경북북부권의 균형개발과 동반성장을 기대했음에도 결과는 인구유출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도 도청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기관이전과 인구유입은 매우 미진하고,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도시 조기조성과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 활성화, 북부권 동반 발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동남권 제2청사 건립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10여년간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 신도청 시대를 시작하였음에도 신도청이 안착도 하기전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2청사가 필요하다면 청사건립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철우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환동해지역본부에 추가적인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4차산업 혁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경북도의 많은 업무가 23개 시군에 위임 또는 사무위탁 되어 있습니다.

군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시,군청이 있음에도 제2청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신도시 조기조성과 안동을 비롯한 낙후된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한 후에 제2청사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제2청사 건립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신도청 조기 활성화 및 북부권 동반 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7월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울산 어린이집에서 두 돌도 되지 않은 성민이가 폭행으로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학대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3개월 된 성민이를 보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8년 7월 현재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동두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동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11개월 된, 그리고 4살 된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또 잃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도 2014년 포항지역 어린이집, 2015년에는 상주와 영주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관계자들은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동 사망사고가 11년 전에도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라면 아동 사망사고의 책임을 보육시설 관계자에게만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를 설치하고 통학버스에 인솔교사 탑승을 의무화하였으나 사망사고를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어린이집 사고 및 학대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망자수 (‘13~’17)
사고건수	4,209건	5,827건	6,797건	8,539건	8,467건	46명
통학버스사고	53건 (1명)	101건 (1명)	107건 (3명)	72건 (1명)	48건	6명
아동학대	202건	295건	427건	587건	776건	

본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반복적인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36분인데 반해 휴게시간은

고작 18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1,12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 시설,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단 1명만 지원합니다. 즉, 도내 2,063개 어린이집 중에서 54.7%인 1,129개소만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은 1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종일 아동을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육일지, 아동관찰일지,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장학습 보고서, 원내 행사, 그리고 안전교육일지, 평가인증 대비 서류 등 잡다한 서류들이 반복되어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모든 문서를 간소화시키고 업무 매뉴얼을 전산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반 편성 아동 수를 줄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 따르면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는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별 정원을 줄여서 보육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표 -2〉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지만 경북도에서 보육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반별 정원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육사업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저출산을 “북한 핵보다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육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경북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7월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준열 의원(농수산위원회) ◎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피해 최소화에만 전념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현재 경북의 23개 시·군은 인구 유출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시 또한 최근 삼성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이전 소식으로 시민들은 향후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북과 대구가 지혜를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행보에 본 의원은 결연히 반대하며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 대구 수돗물에 과불화화합물이 배출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대구시민들의 불안감 확산과 생수 사재기 등을 계기로 대구시는 대구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 논의를 이슈화시키며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할 정부 주도 공동협의체 구성을 독단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지역의 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에 열릴 예정인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주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태세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발생한 낙동강 오염 사태의 원인이 대부분 구미공단에 있기 때문에 대구 취수원을 구미 산업단지로부터 34km 하류에 위치한 매곡·문산정수장에서 구미산업단지 20km 상류인 해평취수장으로의 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2015년부터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민관협의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대구 취수원의 해평취수장

이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면 낙동강 수질 악화와 용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구미시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기업 유치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염총량제 할당량 감소로 지역개발 여건이 저하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도민과 구미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하는 대구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의 행보는 43만 구미시민의 생활권 보장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의 이해와 배려를 빌미로 대구 시민의 권익만 챙기면 된다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낙동강 보의 개방, 오염물질 유입 방지, 오·폐수 처리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로의 취수원 이전만을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기 전에 시설개선 등을 통한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를 두고 마치 구미시민이 터무니없이 뽐니를 부리는 것처럼 대구시가 더 이상 근거 없이 호도하고 자극해서는 안됩니다. 낙동강 수질은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면 구미시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 구미시 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히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7월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관련》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긴 세월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 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바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 국민의 명령이며,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과는 달리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그리고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로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역할확대’라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구각(舊殼)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온전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중앙정부의 시혜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법률적 구속성을 반드시 깨뜨려 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8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희상 현 국회의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지방의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의 권익증진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제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일찍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저서를 출판하시고 국회에서 맹렬히 주창해 오신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우리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이 대한민국을 보전하는 척도임을 확신합니다. 참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작은 바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자명한 이치에도 공감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 록

□ 조 례 안(3건)	71
□ 예 산 안(2건)	92
□ 동 의 안(2건)	99
□ 결 의 안(1건)	102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7. 27.)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7. 27.)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7. 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한다.

제5조 중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민원실 운영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5장제8절 앞에 “제8절 대구경북상생본부”를 삽입한다.

제5장에 제8절(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설치) ①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대구광역시와 협조체제 구축, 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 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구경북상생본부(이하 “대구경북상생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구경북상생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에 둔다.

제63조의3(본부장) 대구경북상생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생협력 정책 기획
2.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3. 대구권 도정 홍보
4. 시도민 소통교류사업
5. 대외 통상교류 협력·의전
6. 농수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직판활동 지원
7. 그 밖에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5장제8절 및 제9절을 각각 제9절 및 제10절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퇴계로 2189”를 “월천길 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락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을 “미래전략기획단, 환동해종합민원실,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락산업국(총무과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u>직속기관의 장</u>, <u>사업소의 장</u>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 <u>직속기관·사업소의</u> 국(부)·과·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 조정실·<u>도민안전실</u>·일자리경제 산업실·자치행정국·<u>문화관광체육국</u>·<u>농축산유통국</u>·<u>환경산림자 원국</u>·<u>복지건강국</u>·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의2(도민안전실) <u>도민안전실</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 사에 관한 사항</u> 9. ~ 13. (생략)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 ----- <u>직속기관의 장</u>, <u>지역본부의 장</u>, <u>사업소의 장</u>----- -----.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 <u>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u>-----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u>재난안전실</u>----- -----<u>관광문화체육국</u>----- ----- -----. 제6조의2(재난안전실) <u>재난안전실</u> 장은 -----.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자치행정국) ----- -----. 1. ~ 7. (현행과 같음) 8. <u>민원실 운영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9. ~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5장 사업소 〈신설〉	제10조(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1. ~ 6. (현행과 같음) 제5장 사업소 제8절 대구경북상생본부 제63조의2(설치) ①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대구광역시와 협조체제 구축, 관광홍보 및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구경북상생본부(이하 “대구경북상생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구경북상생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에 둔다. 제63조의3(본부장) 대구경북상생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생협력 정책 기획 2.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3. 대구권 도정 홍보 4. 시도민 소통교류사업 5. 대외 통상교류 협력·의전 6. 농수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직판활동 지원 7. 그 밖에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제8절</u> 산림자원개발원 제64조(설치) ① (생략) ② 산림자원개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89에 둔다. 제65조(원장) (생략) 제66조(소관사무) (생략) 제67조(하부조직) (생략) <u>제9절</u> 노인전문간호센터 제68조(설치) (생략) 제69조(소장) (생략) 제70조(소관사무) (생략)	<u>제9절</u> 산림자원개발원 제6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월천길 18-----. 제65조(원장) (현행과 같음) 제6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제67조(하부조직) (현행과 같음) <u>제10절</u> 노인전문간호센터 제68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69조(소장) (현행과 같음) 제70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7월 26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당초 문화체육관광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문화가 상위개념이므로 국 명칭을 변경하지 않기로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를 삭제
- 부칙 제4조 중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환동해종합민원실”을 삭제
- 부칙 제4조 중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를 삭제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한다.

제5조 중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민원실 운영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5장제8절 앞에 “제8절 대구경북상생본부”를 삽입한다.

제5장에 제8절(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설치) ①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대구광역시와 협조체제 구축, 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 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구경북상생본부(이하 “대구경북상생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구경북상생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에 둔다.

제63조의3(본부장) 대구경북상생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생협력 정책 기획
2.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3. 대구권 도정 홍보
4. 시도민 소통교류사업
5. 대외 통상교류 협력·의전
6. 농수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직판활동 지원
7. 그 밖에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5장제8절 및 제9절을 각각 제9절 및 제10절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퇴계로 2189”를 “월천길 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락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을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락산업국(총무과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 -----.	〈좌 동〉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 -----.	〈좌 동〉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일자리경제산업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재난안전실 ----- ----- 관광문화체육국 -----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재난안전실 ----- -----.
제6조의2(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 1. ~ 6. (현행과 같음)	〈좌 동〉 〈좌 동〉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민원실 운영, 자연보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9. ~ 13. (생략)	제9조 자치행정국 ----- -----. 1. ~ 7. (현행과 같음) 8. 민원실 운영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9. ~ 13. (현행과 같음)	〈좌 동〉 〈좌 동〉 〈좌 동〉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10조(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 -----. 〈좌 동〉

현 행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5장 사 업 소	제5장 사 업 소	〈좌 동〉
〈신 설〉	제8절 대구경북상생본부	〈좌 동〉
	제63조의2(설치) ①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대구광역시와 협조체제 구축, 관광홍보 및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구경북상생본부(이하 “대구경북상생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구경북상생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에 둔다.	〈좌 동〉
	제63조의3(본부장) 대구경북상생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좌 동〉
	제63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생협력 정책 기획 2.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3. 대구권 도정 홍보 4. 시도민 소통교류사업 5. 대외 통상교류 협력·의견 6. 농수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직판활동 지원 7. 그 밖에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좌 동〉
제8절 산림자원개발원	제9절 산림자원개발원	〈좌 동〉
제64조(설치) ① (생략) ② 산림자원개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89에 둔다.	제6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월천길 18-----.	〈좌 동〉
제65조(원장) (생략)	제65조(원장) (현행과 같음)	〈좌 동〉
제66조(소관사무) (생략)	제6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좌 동〉
제67조(하부조직) (생략)	제67조(하부조직)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9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10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좌 동〉
제68조(설치) (생략)	제68조(설치) (현행과 같음)	〈좌 동〉
제69조(소장) (생략)	제69조(소장) (현행과 같음)	〈좌 동〉
제70조(소관사무) (생략)	제70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좌 동〉
부 칙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 동〉
〈신 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좌 동〉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좌 동〉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좌 동〉
〈신 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 <u>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u> ”을 “ <u>미래전략기획단, 환동해종합민원실,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 포함)</u>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 <u>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종합행정지원과 포함)</u> ”을 “ <u>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 포함)</u> ”으로 한다.

현 행	개정조례안	수정안
〈신 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여성가족 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을 “여성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좌동〉
〈신 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 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삭제〉
〈신 설〉	제3조제2항제6호가목 중 “도청신도시 추진단,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좌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186명”을 “6,2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132명”을 “2,16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10명”을 “11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상당
비 율	25% 이내	55% 이내	-	15% 이내	5%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합 계		6,217	-					
정 무 직		1	-					
일반직	소 계	1,998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 급	11	7		1	2		1
	3 ~ 4급	2	2					
	4급	85	55	7	5	9	9	
	5급 이하	1,883	-					
	전문경력관	13	-					
	소 계	17	-					
별정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구직	소 계	228	-					
	연구관	42			41		1	
	연구사	186	-					
지도직	소 계	29	-					
	지도관	10			10			
	지도사	19	-					
소방직	소 계	3,901	-					
	소방정	23	5		18			
	소방령 이하	3,878	-					
교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u>국민건강보험법</u>」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9.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⑭ (생략) 〈<u>신설</u>〉	제22조(공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국민건강보험법</u>」 <u>제52조</u> ----- 6. ~ 9.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u>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u>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二 예 산 안 二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지사('18. 7. 27.)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18. 7. 27.)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236,787,000	100.00%	7,803,593,000	100.00%	433,194,000	5.55%
일반회계		7,470,760,000	90.70%	7,072,400,000	90.63%	398,360,000	5.63%
특별회계		766,027,000	9.30%	731,193,000	9.37%	34,834,000	4.76%
	기타특별회계	766,027,000	9.30%	731,193,000	9.37%	34,834,000	4.76%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02,702,491	6.10%	480,298,000	6.15%	22,404,491	4.66%
	치수사업특별회계	6,300,000	0.08%	6,300,000	0.08%	0	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977,989	0.08%	2,563,000	0.03%	4,414,989	172.26%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05,505,596	1.28%	104,800,000	1.34%	705,596	0.6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3,032,000	0.40%	33,032,000	0.42%	0	0.00%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9,113,110	0.11%	9,000,000	0.12%	113,110	1.26%
	소방안전특별회계	102,395,814	1.24%	95,200,000	1.22%	7,195,814	7.56%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236,787,000	100.00%	7,803,593,000	100.00%	433,194,000	5.55%
100 지방세수입	1,810,000,000	21.97%	1,810,000,000	23.19%	0	0.00%
110 지방세	1,810,000,000	21.97%	1,810,000,000	23.19%	0	0.00%
200 세외수입	166,675,447	2.02%	155,889,848	2.00%	10,785,599	6.92%
210 경상적세외수입	63,085,566	0.77%	62,913,359	0.81%	172,207	0.27%
220 임시적세외수입	103,589,881	1.26%	92,976,489	1.19%	10,613,392	11.42%
300 지방교부세	1,092,293,795	13.26%	869,284,100	11.14%	223,009,695	25.65%
310 지방교부세	1,092,293,795	13.26%	869,284,100	11.14%	223,009,695	25.65%
500 보조금	4,437,482,025	53.87%	4,297,489,796	55.07%	139,992,229	3.26%
510 국고보조금 등	4,437,482,025	53.87%	4,297,489,796	55.07%	139,992,229	3.26%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0,335,733	8.87%	670,929,256	8.60%	59,406,477	8.85%
710 보전수입 등	294,931,642	3.58%	240,891,000	3.09%	54,040,642	22.43%
720 내부거래	435,404,091	5.29%	430,038,256	5.51%	5,365,835	1.25%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236,787,000	100.00%	7,803,593,000	100.00%	433,194,000	5.55%
010 일반공공행정	1,106,626,538	13.44%	951,932,173	12.20%	154,694,365	16.25%
020 공공질서 및 안전	318,688,392	3.87%	250,758,887	3.21%	67,929,505	27.09%
050 교육	94,377,590	1.15%	83,409,016	1.07%	10,968,574	13.15%
060 문화 및 관광	483,438,258	5.87%	451,124,562	5.78%	32,313,696	7.16%
070 환경보호	616,351,533	7.48%	567,581,591	7.27%	48,769,942	8.59%
080 사회복지	2,829,074,447	34.35%	2,835,395,057	36.33%	△6,320,610	△0.22%
090 보건	120,054,433	1.46%	129,282,474	1.66%	△9,228,041	△7.14%
100 농림해양수산	1,035,858,865	12.58%	986,913,238	12.65%	48,945,627	4.96%
110 산업·중소기업	220,396,803	2.68%	210,002,921	2.69%	10,393,882	4.95%
120 수송 및 교통	335,187,801	4.07%	297,189,553	3.81%	37,998,248	12.79%
140 국토 및 지역개발	441,397,023	5.36%	424,348,111	5.44%	17,048,912	4.02%
150 과학기술	37,728,980	0.46%	34,402,710	0.44%	3,326,270	9.67%
160 예비비	70,724,000	0.86%	70,724,000	0.91%	0	0.00%
900 기타	526,882,337	6.40%	510,528,707	6.54%	16,353,630	3.20%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감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 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2건	610,000		△610,000	
317	농축산유통국	군관리계획(변경)결정등	400,000		△400,000	
317	농축산유통국	기본설계비	210,000		△210,000	

[증액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 국 명	내 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1건	-	610,000	610,000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	610,000	610,000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규모

(단위: 천원, %)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 계	증감률
513,848,499	4,103,546,000	4,617,394,499	12.5

2. 세 입(관별)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합계	증감률
합 계	513,848,499	100.0	4,103,546,000	100.0	4,617,394,499	12.5
1. 이전수입	434,029,721	84.5	4,014,987,334	97.8	4,449,017,055	10.8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385,948,277	75.1	3,622,116,281	88.3	4,008,064,558	10.7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5,813,941	8.9	389,107,796	9.5	434,921,737	11.8
다. 기타이전수입	2,267,503	0.4	3,763,257	0.1	6,030,760	60.3
2. 자체수입	34,353,770	6.7	46,930,666	1.1	81,284,436	73.2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0	0.0	27,339,074	0.7	27,339,074	0.0
나. 행정활동수입	42,578	0.0	793,591	0.0	836,169	5.4
다. 자산수입	7,739,433	1.5	3,961,162	0.1	11,700,595	195.4
라. 이자수입	0	0.0	6,116,696	0.1	6,116,696	0.0
마. 기타수입	26,571,759	5.2	8,720,143	0.2	35,291,902	304.7
3. 기타	45,465,008	8.8	41,628,000	1.0	87,093,008	109.2
가. 전년도이월금	45,465,008	8.8	41,628,000	1.0	87,093,008	109.2

3. 세 출(정책사업별)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합계	증감률
합 계	513,848,499	100.0	4,103,546,000	100.0	4,617,394,499	12.5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90,594,655	56.6	3,924,206,513	95.6	4,214,801,168	7.4
가. 인적자원운용	4,285,492	0.8	1,924,262,135	46.9	1,928,547,627	0.2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51,603,078	10.0	229,684,638	5.6	281,287,716	22.5
다. 교육복지지원	2,111,039	0.4	410,974,707	10.0	413,085,746	0.5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4,579,224	2.8	40,251,726	1.0	54,830,950	36.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1,122,744	2.2	872,969,332	21.3	884,092,076	1.3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06,893,078	40.3	446,063,975	10.9	652,957,053	46.4
2. 평생·직업교육	1,096,196	0.2	13,995,163	0.3	15,091,359	7.8
가. 평생교육	838,196	0.2	6,409,203	0.2	7,247,399	13.1
나. 직업교육	258,000	0.1	7,585,960	0.2	7,843,960	3.4
3. 교육일반	222,157,648	43.2	165,344,324	4.0	387,501,972	134.4
가. 교육행정일반	2,170,747	0.4	59,306,298	1.4	61,477,045	3.7
나. 기관운영관리	12,685,482	2.5	41,626,432	1.0	54,311,914	30.5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62,961,515	31.7	44,411,594	1.1	207,373,109	366.9
라. 예비비 및 기타	44,339,904	8.6	20,000,000	0.5	64,339,904	221.7

**201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감액조서]

(단위 : 천원)

예산 서쪽	소관부서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4건	602,745	-	△602,745	
499	학교지원과	가) 생활관 방수	58,860	-	△58,860	
542	학교지원과	2) 경북간호고등학교	51,380	-	△51,380	
554	포항교육지원청	가) 천장개체(LED포함)	378,740	-	△378,740	
559	학교지원과	1) 경북간호고등학교	113,765	-	△113,765	

[증액조서]

(단위 : 천원)

명세 서쪽	실국명	내용(부기명)	조 정 내 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1건	63,469,331	64,072,076	602,745	
756	기획조정관	예비비	63,469,331	64,072,076	602,745	

== 동 의 안 ==

-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18. 7. 27.)
-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도지사('18. 7. 2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취득재산 20,422,153천원

- 건 물 : 10,458.38㎡ 20,422,153천원(1건)
-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신설 학교 건물 취득(1건)
- (가칭)남울중학교 10,458.38㎡(3,163평) 20,422,153천원

2. 처분재산 1,554,787천원

- 토 지 : 14,208㎡ 1,014,451천원(1건)
- 건 물 : 2,094.6㎡ 454,988천원(1건)
- 공작물 : 13식 81,925천원(1건)
- 입목죽 : 58주 3,423천원(1건)
- 폐교재산 매각(1건)
- (구)대전초등학교 14,208㎡(4,298평) 1,554,787천원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1. 주요(수정)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펀 드 명	포스텍 바이오펀드	포스텍 Challenge Seed 펀드
조성기간	2022년까지	2022년까지
펀드규모	500억원	50억원
펀드조성	포스텍 출자금 100억원 기반으로 출자자 모집	모태펀드, 경상북도, 포스텍, 포스텍 기술지주회사
운 용 사	쿼드 자산운용사(주)	포스텍 기술지주회사
운용기간	7년(투자 4, 회수 3)	10년(투자 5, 회수 5)
투자조건	지역 기반 기업 및 포스텍 구성원 창업기업에 우선 투자	대학 창업기업에 75% 이상 투자

2.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1개 기관	1개 사업	200,000	
1	일자리경제 산 업 실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바이오펀드 조성 지원	200,000	과학기술 정 책 과

二 결 의 안 二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18. 7. 27.)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8년 7월 27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18. 9. 4(화) 16:30(1차 본회의)
 - 2018. 9. 11(화) 14:00(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4:00(3차 본회의)
 - 2018. 9. 13(목) 11:00(4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1차 본회의(독도), 2~4차 본회의(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의정활동보고서

(제301회 임시회)

(제302회 임시회)



2018. 9. 인쇄 / 2018. 9.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